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새통일희망나눔재단

수 신 : 통일부장관

(경 유) (정착지원과장)

제 목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의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통일희망나눔재단은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들과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으로써 통일과 소외계층등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과 연구 및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3. 본 재단은 통일부 정착지원과-908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자료를 작성 후 발송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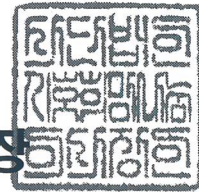
가. 기 관 명 : (사)통일희망나눔재단

나. 해당자료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붙임 1.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부.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부. 끝.

(사)통일희망나눔재단 이사장



담당 이석영

상임이사 김현진

이사장 김태욱

협조자

시행 희망나눔 2020-8

(2020.03.30.)

접수

전화 (02)2141-1222

팩스 (02)541-0906

ads7337@seeho.co.kr

/공개

우 135-958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702, 8층(청담동) TEL:02-2141-1260/FAX:02-512-0080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사)통일희망나눔재단	② 사업지등록번호(고유번호)	211-82-18746
③ 대표자 성명	김태옥	④ 기부단체 구분	국내지정기부금단체
⑤ 전자우편주소	http://www.seehonanum.or.kr/	⑥ 사업연도	2019년도
⑦ 전화번호	02-2141-1222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4.08.04
⑨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2, 8층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원)

⑩ 월별	⑪ 수입	⑫ 지출	⑬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113,790,187	8월	-	2,557,000	110,997,524
1월	9,000,000	44,000	122,746,187	9월	40,000,000	68,250	150,929,274
2월	-	150,000	122,596,187	10월	-	761,500	150,167,774
3월	-	333,200	122,262,987	11월	-	964,500	149,203,274
4월	-	2,634,000	119,628,987	12월	29,787,429	10,903,340	168,087,363
5월	-	1,265,000	118,363,987	합계	78,833,166	24,535,990	
6월	45,737	1,061,200	117,348,524	차기이월	-	-	168,087,363
7월	-	3,794,000	113,554,524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⑭ 지출월	⑮ 지급목적	⑯ 지급건수	⑰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⑱ 금액
4월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121	하나원	2,590,000
5월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84	하나원	1,221,000
6월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81	하나원	1,005,000
7월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147	하나원	3,540,000
8월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117	하나원	2,450,500
10월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68	하나원	717,500
11월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72	하나원	920,500
12월	통일희망 나눔음악회 개최, 안경지원	372	새터민, 하나원	10,849,340
⑲ 연도별	⑳ 지급목적	㉑ 수혜인원	㉒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㉓ 금액
2019년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790	하나원	13,953,200
	통일희망 나눔음악회 개최	272	새터민	9,340,640
	일반관리비(인건비/홈페이지 운영비 등)	-	인건비, 보험료 외	1,242,150
합 계				24,535,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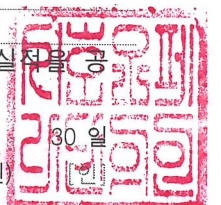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㉔ 지출월	㉕ 국가명	㉖ 지급목적	㉗ 지급건수	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㉙ 금액
㉚ 연도별	㉛ 국가명	㉜ 지급목적	㉝ 수혜인원	㉞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㉟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
개합니다.

2020 년 3 월 30 일
제출인: 사단법인 통일희망나눔재단 (단체의 직인)



지정기부금단체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2019. 01. 01. ~ 2019. 12. 12.
① 법인(단체)명	(사)통일희망나눔재단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11-82-18746
③ 대표자 성명	김태욱	④ 기부금단체 지정 및 만료일	지정일 : 2014.08.04 만료일 :
⑤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2, 8층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www.seehonanum.or.kr

2. 의무이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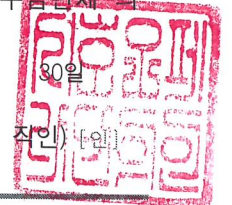
⑦ 의무	⑧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 결과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재단은 기부금 및 기부 물품 전액을 탈북민 및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하였음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재단 정관 제 37조(법인 해산)에 규정하고 있음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제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 연도 종료일부턴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본재단의 홈페이지 (http://www.seehonanum.or.kr)에 내역을 공개하였음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재단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물리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음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재단은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사업에 지출하였음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통일희망나눔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있음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제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본재단의 홈페이지 (http://www.seehonanum.or.kr)에 내역을 공개하였음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재산 1억미만인 시설로 내부감사 해당사항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2019년 3월 30일

제출인 : 사단법인 통일희망나눔재단 (단체의 직인)

귀하



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